파주시 공고 제 2026-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6일

파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27. ~ 2026. 12. 11.(청문실시일 전일까지)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당사자**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연면적
2019-건축과-신축허가-59	이O석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08-10	숙박시설	8,481.05㎡
2023-허가2과-신축허가-63	주식회사 삼O물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13-9 외 1	공장	2,080㎡
2023-허가2과-신축허가-68	김O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301-15	방송통신시설	2,147㎡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착공연기 만료)에 미착수
6.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7.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8. **청문실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허가2과	담당자	이 경 석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031-940-5861
일 시	2026년 12월 14일 15시			장 소	민원동 회의실 (시청로 50, 민원동 2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파주시 건축주택국 허가1과 건축신고1팀장			
	성 명	전찬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2팀(031-940-58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파주시청	부서명	허가2과	담당자	이 경 석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215)			전화번호	031)940-5861
		전자우편 주 소	imogiks@korea.kr			팩스번호	031)940-5869